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24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강일 · 김남근 · 황운하
유동수 · 손명수 · 민병덕
박민규 · 강준현 · 송재봉
이재관 · 백혜련 · 김문수
이훈기 · 박희승 · 허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
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
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
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
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
항제7호).

법률 제 호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를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7. ----- ----- ----- ----- ----- ----- -----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